

# 유럽의 가정용 전기 검침제도

## 1. 머리말

전력회사의 검침원이 매월 한번씩 현지를 방문하여 검침하는 우리나라나 일본과는 달리, 유럽 제국의 가정용 고객에 대한 검침제도는 그 방법, 빈도 등이 국가 및 사업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검침 빈도가 수개월에 한 번에서 수년에 한 번까지 광범위하게 걸쳐있을 뿐만 아니라, 원격검침 계량기를 거의 모든 가정용 고객측에 설치하여 이미 검침원에 의한 현지방문이 불필요하게 된 사례도 있으며, 고객 자신이 검침하고 전력회사에 연락하여 그 사용량이 전력회사 측의 상정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검침원이 나가보는 구조를 도입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검침업무에 경쟁을 도입하여 전력회사 자신이 검침하는 대신에 다른 회사의 검침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금력이 없는 신규 참여자가 영업개시 초기부터 자사의 검침원을 광범위하게 배치시킬 필요가 없도록 제도화되어 전력소매사장에 신규참여와 관련된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2005년 가을에 현지에서 수집된 내용을 근거로 각 나라의 가정용고객에 대한 검침제도에 관하여 소개한다(표 참조).

1 | 가

회 사 명(국가)	일반적인 검침빈도	실제의 검침주체
브리티시 가스(영국)	3개월에 1회	동사 검침원, 또는 외부 위탁
EDF(프랑스)	연 2회	EDF GDF 배전국의 검침원
에네르(이탈리아)	-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 완료, 검침원에 의한 검침 불필요
포탐(피란드)	2년에 1회	동사 검침원 외에 경비회사 등에도 위탁
바텐팔(스웨덴)	연 1회	우체국등에 위탁

한편, 이 글에서 소개하는 여러 나라 가운데 현재 소매시장을 전면자유화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과 북유럽뿐이며 프랑스, 이탈리아는 EU 방침에 따라 2007년 7월부터 전면자유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다.

## 2. 각국의 검침제도

### 가. 영국

분기별로 전력회사의 검침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검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에서는 약 80%의 계량기가 옥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이 부재중인 경우에는 검침을 할 수 없다(따라서, 검침원에 의한 검침율이 50%도 안되는 회사도 있다고한다). 이 경우, 과거의 사용량에 의거한 추정사용량에 의하여 전기요금 산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 고객은 자신이 직접 검침하여 소매회사에 연락할 수도 있다.

계량기 검침의 연락방법으로서 전력회사는 Web 상의 기록이나 콜센터 전화연락, 휴대전화의 쇼트 메시지 서비스 등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에는 대형 할인점 등과 제휴 카드를 발행하여 자신이 검침한 지침을 연락하는 고객에 대하여 포인트를 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력회사도 있다.

또한 전력시장과 가스시장의 전면자유화가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된 영국에서는 전기와 가스의 일괄계약(Dual-fuel)을 선택하고 있는 고객이 많으며, 계량기도 전기·가스 일괄하여 검침하는 것도 적지 않다.

### 나. 프랑스

프랑스는 현재, 가정용의 소매시장이 자유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EDF·GDF(프랑스가스회사) 배전국(EDF의 하부조직)의 검침원이 반년에 한 번씩 현지를 방문하여 검침하고 있다. EDF는 공사 시대부터 검침과 청구 업무를 GDF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주식회사화된 현재에도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EDF·GDF 배전국은 전기·가스의 일괄검침을 하고 있으며 청구도 일괄하여 우송하고 있다.

또한 희망자에게는 고객 자신이 검침하여 EDF에 연락하는 서비스(2개월에 1회, 정해진 기일 내에 검침하여 EDF에 연락하는 제도임. 기일 내에 검침하여 EDF에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사용량으로 청구됨.) 이 제도에서도 최저 연 1회는 검침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검침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7월의 전면자유화 개시에 따라 현재는 공통 서비스로 실시되고 있는 전기·가스의 일괄검침·일괄청구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 다. 이탈리아

국내 최대의 에너지사가 2001년 10월부터 원격검침 계량기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 말까지 거의 전 고객(약 3,000만 건)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였다. 이 계량기에는 검침만이 아니고 송전 정지와 사용전력량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으며, 장래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의 원격조작 능력을 부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 계량기 설치전에는 연 1회, 검침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검침을 실시하여 왔다.

라. 북유럽(핀란드, 스웨덴)

전력회사의 검침원 외에 전력회사가 검침업무를 위탁한 사업자(업무상 지역을 순회할 필요가 있다는 우체국, 경비회사 등이 많음)가 1~2년에 1회의 빈도로 현지를 방문하여 검침한다. 그 밖에 각 전력회사에서도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고객에 의한 검침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핀란드의 포탐사, 스웨덴의 바텐팔사는 2009년까지 모든 가정용 고객에 원격검침 계량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5. 맺음말**

전력회사에서 매월 1회 현지를 방문하여 검침하는 우리나라(대형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단지의 경우는 대부분이 주택관리사무소에서 검침을 실시)에서는 고객이 전력회사에 연락없이 이전했을 경우나 요금이 미납된 채로 소재불명이 된 경우라도 비교적 빠른 단계에서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여기에서 소개한 여러 나라의 전력회사는 수 개월에서 수 년에 한번의 빈도로 현지 수용가를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 발견이 늦어져 전기 요금 회수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각 나라에서는 검침을 실시하지 않는 달이라도 과거의 사용량에 기초하여 추정사용량을 산출하거나 고객에 의한 검침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대개가 1~3개월에 한 번의 빈도로 청구하고 있어, 어떤 경우에도 신속하게 사태를 파악하여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

(발췌 : 일본전기협회 발행 “전기협회보”)